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6월 3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5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7. 14) 상정

○ 제145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7. 14)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조 재 형)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0310호, 2007. 10. 4, 공포·시행)되고,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분법되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폐지 및 요율을 변경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제139조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12종목을 재조정함. (안 별표 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령의 제정에 따라 26개 종목 신설 및 2개 종목의 요율을 변경함. (안 별표 1)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개정에 따라 8개 종목을 폐지함.(안 별표 1)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57호
의결년월일	2008. 7. 18 (제145회)

제출년월일 : 2008. 6. 3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0310호, 2007. 10. 4, 공포·시행)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분법되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폐지 및 요율을 변경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12종목을 기준금액으로 재조정함.(안 별표 1)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 3개 법령의 제정에 따라 26개 종목 신설 및 2개 종목의 요율을 변경함.(안 별표 1)
- 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개정에 따라 8개 종목을 폐지함.
(안 별표 1)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을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와”로 하고,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을 “징수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조례에 의하여”를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3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으로 하고, “수인”을 “여러 민원인”으로 하며, “1인”을 “1명”으로 하고, “동일사항”을 “같은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을 “여러 민원인이 동시에 같은”으로 하고,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제증명등은 같은 민원인이 2대 이상”으로 하고, “수건”을 “여러 건”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제증명등발급신청서 등에 시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 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첨부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관련 서류에 첨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감면등”을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다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필요에 의하여”를 “필요에 따라”로 하며, “기타 제증명등”을 “제증명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대장”을 “중·소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통,반장”을 “통·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조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며, “유족중”을 “유족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4조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며, “유족중”을 “유족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을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중”을 “제5조에 따른 참전군인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중 다음 각목의 1”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제증명 등”을 “제증명등”로 하고, “날인하여야”를 “찍어야”로 한다.

제8조의 제목“(규칙)”을“(시행규칙)”으로 하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제증명등의 수수료표(제3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1. 증명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1통	1,200	
2) <u>공장등록증명</u>	1통	<u>1,000</u>	전국통일
3) 건축물관리대장 무등채 증명	1통	700	
4)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통	3,000	
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000	
2)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	1필지	1,500	
3)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1,500	
4)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1,200	
5) <u>개별공시지가 확인서</u>	1필지	<u>800</u>	전국통일
6) 부동산중개업			
가) <u>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u>			
· 개 인	1건	<u>20,000</u>	전국통일
· 법 인	1건	<u>30,000</u>	전국통일
나)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	9,000	
다)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1건	28,000	
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u>지방세 납세증명서</u>	1통	<u>800</u>	전국통일
2) <u>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u>	1통	<u>800</u>	전국통일

(단위: 원)

라.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 주택분양금 납부증명	1통	1,500	
2) <u>개별주택가격확인서</u>	1호	800	전국통일
3) <u>공동주택가격확인서</u>	1호	800	전국통일
마.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1건	600	
바. 그 밖의 제증명			
1)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800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가. 일반행정 관계			
1) <u>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u>	1건	5,000	전국통일
2) <u>공유재산의 계속 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u>	1건	3,000	전국통일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1건	3,500	
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1 건	50,000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	1 건	14,000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1 건	35,000	
다. 건설 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허가신청	1건	58,000	
2) 하천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6,000	
3)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신청	1건	4,000	
4) 공(시)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	1건	4,500	
5)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27,000	
6)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4,000	
7)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4,000	
8)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4,000	
9)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4,700	

(단위: 원)

라.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u>100,000</u>	전국통일
2) 의료기관 개설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u>40,000</u>	전국통일
3)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u>40,000</u>	전국통일
4)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u>20,000</u>	전국통일
5)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	1건	70,000	
6) 치과기공소 양수 신고	1건	70,000	
7) 안경업소 개설등록(양수신고 포함)	1건	70,000	
마.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 등록	1건	52,000	
2) 공연장 변경등록	1건	42,000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	220,000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170,000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1건	170,000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87,000	
7)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1건	81,000	
8)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1건	60,000	
9) 게임제작업 등록	1건	<u>35,000</u>	
10) 게임제작업 변경등록	1건	<u>25,000</u>	
11) 게임배급업 등록	1건	<u>35,000</u>	

(단위: 원)

<u>12) 게임배급업 변경등록</u>	1건	<u>25,000</u>	
<u>1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u>	1건	<u>55,000</u>	
<u>14)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u>	1건	<u>25,000</u>	
<u>15)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u>	1건	<u>55,000</u>	
<u>16)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u>	1건	<u>25,000</u>	
<u>1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u>	1건	<u>55,000</u>	
<u>1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u>	1건	<u>25,000</u>	
<u>1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u>	1건	<u>60,000</u>	
<u>2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u>	1건	<u>40,000</u>	
<u>2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u>	1건	<u>50,000</u>	
<u>2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u>	1건	<u>30,000</u>	
<u>23) 영화상영관 등록</u>	1건	<u>70,000</u>	
<u>24) 영화상영관 변경등록</u>	1건	<u>50,000</u>	
<u>25) 비디오물제작업 신고</u>	1건	<u>35,000</u>	
<u>26) 비디오물제작업 변경신고</u>	1건	<u>25,000</u>	
<u>27) 비디오물배급업 신고</u>	1건	<u>35,000</u>	
<u>28)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u>	1건	<u>25,000</u>	
<u>29)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u>	1건	<u>50,000</u>	
<u>30)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u>	1건	<u>36,000</u>	
<u>3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u>	1건	<u>35,000</u>	
<u>3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변경신고</u>	1건	<u>25,000</u>	
<u>33)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u>	1건	<u>35,000</u>	
<u>34)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u>	1건	<u>25,000</u>	
<u>35)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등록</u>	1건	<u>35,000</u>	
<u>3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등록</u>	1건	<u>25,000</u>	

(단위: 원)

37)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55,000	
38)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1건	41,000	
바. 환경위생관계			
1) 세척제 제조업 신고	1건	20,000	
2) 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	1건	15,000	
3)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1건	20,000	
4) 기타 위생용품제조업변경신고	1건	15,000	
사. 교통 관계			
1)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1건	6,000	
2) 자가용화물자동차(신규·변경)신고	1대	1,400	
3)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1대	1,400	
4)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1대	1,400	
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대	1,400	
아. 농림 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50,000	
2) 비료수입원 신고	1건	20,000	
자. 체육진흥 관계			
1) <u>체육시설업 신고</u>	1건	<u>30,000</u>	전국통일
2) <u>체육시설업 변경신고</u>	1건	<u>10,000</u>	전국통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u>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u>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와</u>----- ----- -----<u>징수에 필요한</u>----- ----- -----.</p>
<p>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u>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u></p>	<p>제2조(적용) ----- ----- -----<u>조례에 따라</u>-----.</p>
<p>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u>별표 1과 같다.</u></p>	<p>제3조(수수료)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u>별표 1과 같다.</u></p>
<p>제3조의3(정보공개수수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u>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u></p>	<p>제3조의3(정보공개수수료) ----- ----- -----<u>제17조제1항에 따른</u>----- ----- -----.</p>
<p>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u>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u></p>	<p>제4조(기준) ① ----- <u>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u>-----<u>여러 민원인</u>----- ----- ----- ----- ----- -----<u>1명</u>-----</p>

현행	개정안
<p>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u>동일사항</u>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p> <p>② <u>수인</u> 동시에 <u>동일한 공부</u> 또는 <u>도면의 열람</u>을 청구할 때에는 <u>1인</u>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p> <p>③ 자동차에 관한 <u>제증명등</u>에 있어 <u>동일인</u>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u>수건의 제증명등</u>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p>	<p>----- ----- -----<u>같은 사항</u>----- ----- ② <u>여러 민원인</u>이 동시에 <u>같은</u>----- ----- --<u>1명</u>----- ----- ③ -----<u>제증명등은 같은 민원인</u>이 2대 이상----- -----<u>여러 건</u>----- ----- -----.</p>
<p>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u>제증명등 발급신청서</u> 또는 <u>신고서등</u>에 첨부케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u>구두 신청등</u>과 같이 사전 첨부가 <u>곤란한</u>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케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의 징수 방법은 <u>제증명등 발급신청서</u> 등에 시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u>구두 신청 등</u>과 같이 사전에 첨부가 <u>곤란한</u> 때에는 제증명등의 <u>관련 서류</u>에 첨부하는 것으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u>다만</u>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p>	<p>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 ----- 1. -----제5조</p>

현행	개정안
<p>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p>	<p>에 따른----- ----- -----</p>
<p>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p>	<p>2. ----- -----필요에 따라----- -----제증명등</p>
<p>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통대장의 공부열람표</p>	<p>3. -----중·소대장----- -----</p>
<p>4. 통,반장의 공부열람표</p>	<p>4. 통·반장-----</p>
<p>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시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p>	<p>5. ----- -----제4조에 따른 유족 중에서----- -----</p>
<p>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중 시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p>	<p>6. ----- --제4조에 따른----- -----유족 중에서----- -----</p>
<p>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시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p>	<p>7. -----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에서-- ----- -----</p>
<p>8.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중 시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p>	<p>8. ----- --제5조에 따른 참전군인 중에서----- -----</p>

